#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장섭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180 발의연월일: 2021. 2. 17.

발 의 자:이장섭·임호선·송갑석

송재호·강훈식·송영길

인재근 • 변재일 • 윤준병

윤영찬 · 김영호 의원

(11인)

#### 제안이유

정부는 2020년 7월 한국판 뉴딜을 통해 2025년까지 전기자동차 113 만대, 수소자동차 20만대를 보급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으며 한 국판 뉴딜의 구체적인 이행을 위해 미래자동차 확산 및 시장선점 전 략을 수립하고 후속조치를 준비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실시된 서울시 대시민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기자동차 구입의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충전소 부족이 꼽혔으며, 수소 충전소의 경우 2021년 1월 기준 전국 44개소만이 운영 중임. 전기자동차의 경우에는 충전구역에서 주차 관련 각종 편법적인 민폐 행동이 자행되어 다른 이용자의 불편이 커지고 있음. 또한 기존 일반자동차 시장이 굳게 형성되어 있고, 신산업으로서 생산 단가가 높은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 산업이 시장에서 성장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의 설치 의무를 부과·확대하고 충전기 관련 단속을 강화하는 등 충전 및 주차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목표제를 도입하며 관련 기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대규모 수요 창출 및 국내 산업육성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수소연료공급시설의 범위를 확대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기업 에 대하여 정의함(안 제2조).
- 나.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의 근거를 마련함 (안 제8조의2 신설).
- 다. 대규모 수요자에 대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목표제를 도입함 (안 제10조의3 신설).
- 라. 공공건물 등에 대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의 설치를 의무화함(안 제11조의2제1항).
- 마. 혁신도시 내 수소충전소 1기 이상 설치를 의무화함(안 제11조의2 제2항 신설).
- 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단속을 강화함(안 제11조의2제6항, 제8항 및 제16조제2항).
- 사. 국·공유지 내 영구시설물 설치 시 허가절차를 명확화함(안 제11조 의3제2항).

- 아. 국·공유지 내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구축 시 임대료 감면한 도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의3제4항 및 제5항).
- 자.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계획의 승인 권한을 광역지방자치단체장에 게 부여함(안 제11조의4 및 제11조의5 신설).
- 차.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 미이행 시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11조의6 및 11조의7 신설).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호 중 "공급하는"을 "공급하기 위하여 수소를 생산·저장·운송·충전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0.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기업"이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와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 가. 환경친화적 자동차 또는 부품을 제작·조립하는 기업
  - 나.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또는 수소연료공급시설을 생산하 거나 설치·운영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기업
  제3조제1항 후단 중 "도지사 또는"을 "특별자치시장·도지사·"로 한다.
  제5조제1항 후단 중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과"을 "환경친화적 자동차와 수소연료공급시설 보급과"로 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6조제1항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 기술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술기반조성사업을"을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 기술을 효율적으로 개발 및 보

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로 하여 같은 조 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4. 환경친화적 자동차 기준의 개발 및 검증사업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8조의2(충전시설 등에 대한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 1.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또는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생산·공 급·판매 또는 설치·운영에 필요한 자금 지원
  - 2. 환경친화적 자동차 또는 부품의 개발·생산을 위한 연구·조사
  - 3.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기업 지원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기준,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으로 정한다.

제10조의2제1항 중 "공공기관"을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으로, "지방공기업"을 "지방공기업(이하 "지방공기업"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3(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목표)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이하 "구매대상자"라 한다)가 업무용 차량을 구입하거나 임차할 경우 일정량 이상의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구매하도록 구매목표(이하 "구매목표"라 한다)를 정할 수 있다.
-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 업을 하는 자
-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을 하는 자
- 3.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일 반택시운송사업을 하는 자
- 4.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수 사업을 하는 자
- 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공시 대상기업집단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구매대상자가 구매하여야 할 구매목표를 매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한다.
- ③ 구매대상자는 연간 구매목표에 따라 매년 구매계획서를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구매목표를 정할 때에는 환경친화적 자동 차의 개발현황 및 구매대상자의 경영상태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구매목표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구매대상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구매목표의 이행 여부 확인에 필요한 업무를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5조에 따른 한국에너지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충전시설을"을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7항 및 제8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6항) 중 "시·도지사는"을 "시장·군수·구청장은"으로, "제4항을"을 "제5항 및 제6항을"로, "충전구역에"를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에"로 하고, 같은 조에 제9항 및 제10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시·도지사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 호에 따른 혁신도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규격에 따른 수소충전소를 1기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 ⑥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동차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전기자동차
- 2. 하이브리드자동차
- 3. 수소전기자동차
- ⑨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및 그 밖에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의 수행 또는 보안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해당 기관이 구축·운영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개방하고, 개방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위치, 개방시간 및 이용조건 등의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① 제9항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개방 및 정보공개의 범위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의3제2항 단서 중 "조례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를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지방의회의 동의 절차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 중 "100분의 50"을 각각 "100분의 80"으로 한다.

제11조의4부터 제11조의7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1조의4(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계획의 승인 등) ① 수소연료공급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계획(이하 "설치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설치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설치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하려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설치계획의 승인, 변경승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1조의5(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 등의 의제) ① 수소연료공급시설을 설치하려는 자가 제11조의4제1항에 따라 설치계획의 승인 또는 변 경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 1.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 2. 「건축법」 제16조에 따른 변경허가
  - 3.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에 따른 고압가스 제조허가 및 변 경허가
  - ② 시·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설치계획을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사전협의를 하여야한다. 변경승인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③ 제1항 각 호의 법률에서 정하는 관계 서류제출 및 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
- 제11조의6(시정명령 등) ①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설치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설치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있다.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11조의2제1항 각호의 소관 대상시설에 대한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

차구역을 설치하거나 관리·보수 또는 개선하는 등 시정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시장·군수·구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제11조의7(이행강제금)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1조의6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고 기간 이내에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의 설치 비용 등을 고 려하여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 위반 정도에 따른 금액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 알려야 한다.
  -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에는 이행강제금의 금액, 부과 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이의제기 방법 및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문서로 하여야 한다.
  -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최초의 시정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매년 1회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 ⑥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1조의6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시정명령을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⑦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행강제금을 내지 아니하면 「지방행정제재·부 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8조까지"를 "제8조까지, 제8조의2"로 한다.

제15조제2호 중 "제10조"를 "제8조의2, 제10조"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제11조의2제5항을"을 "제11조의2제7항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1조의2제4항을"을 "제11조의2제5항 및 제6항을"로, "충전구역에"를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에"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시·도지사가"를 "시장·군수·구청장이"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11조의5의 개정규정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에 관한 경과조치) 제11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상시설로서 이 법 시행일 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이 법 시행일 로부터 1년 이상 4년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정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9. "수소연료공급시설"이란 수	9
소전기자동차에 수소를 <u>공급</u>	<u>과</u>
<u>하는</u> 시설을 말한다.	급하기 위하여 수소를 생산·
	저장·운송·충전하는
<u> &lt;신 설&gt;</u>	10.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기
	업"이란 환경친화적 자동차
	와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가. 환경친화적 자동차 또는
	부품을 제작·조립하는 기
	<u>업</u>
	나.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
	시설 또는 수소연료공급시
	<u>설을 생산하거나 설치·운</u>
	<u>영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u>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기준에 따른 기업

제3조(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등에 관한 기본계획) ① 산업 통상자원부장관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을 촉진 하기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② ~ ⑤ (생 략)

제5조(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시행계획 등) ① 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 도시사의 의견을 들어 매년 환 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에 관 한 시행계획(이하 "보급시행계 획"이라 한다)을 수립·추진하여 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과 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제3조(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등에 관한 기본계획) ①
<u>특별자치시장·도지사·</u>
② ~ ⑤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5조(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제5조(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제5조(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시행계획 등) ①
제5조(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시행계획 등) ①

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③ (생 략)

제7조(기술기반조성사업의 추진) 제7조(기술기반조성사업의 추진) 국가는 제6조제1항에 따른 환 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 하여 다음 각 호의 기술기반조 성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 3. (생 략) <신 설>

4. (생략) <신 설>

②·③ (현행과 같음)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 경친화적 자동차 관련 기술개 기술을 효율적으로 개발 및 보 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 업을-----.

- 1. ~ 3. (현행과 같음)
- 4. 환경친화적 자동차 기준의 개발 및 검증사업

5. (현행 제4호와 같음)

제8조의2(충전시설 등에 대한 지 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 1.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또는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생 산·공급·판매 또는 설치·운영 에 필요한 자금 지원
- 2. 환경친화적 자동차 또는 부 품의 개발·생산을 위한 연구· 조사

제10조의2(공공기관의 환경친화 적 자동차의 구매 의무) 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 률」에 따른 <u>공공기관</u>과 「지 방공기업법」에 따른 <u>지방공기</u> 업의 장은 업무용 차량을 구입 하거나 임차할 경우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차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환경 친화적 자동차로 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신 설>

3.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기업 지원에 관하여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기준,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의2(공공기관의 환경친화
적 자동차의 구매 의무) ①
<u>공공기관(이하</u> "공공
<u>기관"이라 한다)</u>
"지방공기업"이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제10조의3(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목표) 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구매대상자"라 한다)가 업무용 차량을 구입하거나 임차할 경 우 일정량 이상의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구매하도록 구매목표 (이하 "구매목표"라 한다)를 정 할 수 있다.

-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 차운송사업을 하는 자
-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자동차대 여사업을 하는 자
- 3.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을 하는 자
- 4.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화물자동 차 운수사업을 하는 자
- 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구매 대상자가 구매하여야 할 구매 목표를 매년 관계 중앙행정기

제11조의2(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제충전시설 등) ① 다음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관계 법령 및 대통령령으로정하는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③ 구매대상자는 연간 구매목 표에 따라 매년 구매계획서를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구매 목표를 정할 때에는 환경친화 적 자동차의 개발현황 및 구매 대상자의 경영상태 등을 고려 하여야 한다.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구매 목표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구매대상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구매 목표의 이행 여부 확인에 필요 한 업무를 「에너지이용 합리 화법」 제45조에 따른 한국에 너지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네11조의2(혹	환경친화	·적	자동:	차의
충전시설	등) ①			

바에 따라 해당 대상시설에 환 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 ~ 4. (생략) <신 설>

② ~ ④ (생 략)

<신 설>

⑤ (생략)

⑥ 시·도지사는 교통, 환경 또 는 에너지 관련 공무원 등 소 속 공무원에게 제4항을 위반하 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 제6항을-----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 1. ~ 4. (현행과 같음)
- ② 시·도지사는 「혁신도시 조 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_ 제2조제3호에 따른 혁신도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규격에 따른 수소충전소를 1기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 ③ ~ ⑤ (현행 제2항부터 제4 항까지와 같음)
- ⑥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동차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전기자<u>동차</u>
- 2. 하이브리드자동차
- 3. 수소전기자동차
- ⑦ (현행 제5항과 같음)
- ⑧ 시장·군수·구청장은-----
- -----제5항 및

설의 충전구역에 주차하고 있 는 자동차를 단속하게 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 제11조의3(국유재산·공유재산의 제11조의3(국유재산·공유재산의 임대 등) ① (생 략)
  -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에-----

- ⑨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 관, 지방공기업 및 그 밖에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 은 소관 업무의 수행 또는 보 안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해당 기관이 구축·운영하는 환 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개방하고, 개방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위치, 개방 시간 및 이용조건 등의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 ⑩ 제9항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개방 및 정 보공개의 범위와 방법 등에 필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하다.

임대 등) ① (현행과 같음)

2	 	 	 	 	 	 _	_	 
	 	 	 	 	 	 _	_	 

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자진철거 또는 철거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면 조례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③ (생략)

- ④ 국가가 제1항에 따라 국유 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료를 100분의 50의 범 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
- ⑤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료를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있다.

<신 설>

,
<u>지방의회의 동의를 받</u>
아야 하며, 지방의회의 동의 절
차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현행과 같음)
4
<u>100</u> 분의 <u>80</u>
⑤
100분
의 <u>80</u>
· 』11조의4(수소연료공급시설 설
치계획의 승인 등) ① 수소연
료공급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u> </u>

<신 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계획 (이하 "설치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설치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설치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하려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사항 외에 설치계획의 승인, 변경승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의5(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 등의 의제) ① 수소연료공 급시설을 설치하려는 자가 제1 1조의4제1항에 따라 설치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u>건축허가</u>

- 2. 「건축법」 제16조에 따른 변경허가
- 3.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 4조에 따른 고압가스 제조허 가 및 변경허가
- ② 시·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설치계 획을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미 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한다. 변경승인 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③ 제1항 각 호의 법률에서 정하는 관계 서류제출 및 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의6(시정명령 등) ①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1조의2 제1항을 위반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 구역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설치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설 치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

<신 설>

<신 설>

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시 장·군수·구청장에게 제11조의2 제1항 각 호의 소관 대상시설 에 대한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 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 치하거나 관리·보수 또는 개선 하는 등 시정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시장·군수· 구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 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1조의7(이행강제금) ① 시장· 군수·구청장은 제11조의6제1항 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고 기간 이내에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 니한 자에게는 환경친화적 자 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 역의 설치 비용 등을 고려하여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 위 반 정도에 따른 금액 및 그 밖 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
-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 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에는 이행강제금의 금액, 부과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이의제기 방법 및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최초의 시정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매년 1회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 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 수할 수 있다.

⑥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1조의6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시정명령을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⑦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행 제13조(자금지원을 위한 재원) 제6조부터 제8조까지, 제10조, 제11조제2항 및 제11조의2제3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자금은다음 각호의 재원에서 지원할수 있다.

1. ~ 3. (생 략)

- 제15조(업무의 위탁) 국가나 지방 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 의 일부를 관계 전문기관에 위 탁할 수 있다.
  - 1. (생략)
  - 2. 제8조, <u>제10조</u> 및 제11조제2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업무
  - 3. (생략)
- 제16조(과태료) ① <u>제11조의2제5</u> <u>항을</u> 위반하여 충전 방해행위 를 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 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② 제11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u>강제금을 내지 아니하면 '지</u>
	<u>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u>
	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
	<u>다.</u>
제	13조(자금지원을 위한 재원)
	<u>제</u> 8조까지, 제8조의2
	1. ~ 3. (현행과 같음)
제	15조(업무의 위탁)
	1. (현행과 같음)
	2 <u>제8조의2, 제10조</u>
_11	3. (현행과 같음)
제	16조(과태료) ① <u>제11조의2제7</u>
	<u> 항을</u>
	② <u>제11조의2제5항 및 제6항을</u>

충전구역에주차한 자에게는 2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 태료는 관할 <u>시·도지사가</u> 부과· 징수하며, 과태료를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에 따른 과태료의 금액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차구역에
③
시장·군수·구청장이